

선지급서비스 특약

선지급서비스특약 약관

제 1 관 보험금의 지급

제 1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제 12 조 (특약의 보험기간) 에서 정한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 3 조 (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종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단 결과 피보험자의 남은 생존기간이 6 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회사의 신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주된 보험계약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이라 합니다) 사망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 사망보험금 (이하 “보험금” 이라 합니다) 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병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정신병원

바. 종합병원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 2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아도 이 특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주계약 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이 특약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생존기간 상당분의 이자, 보험료 및 주계약에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금과 이자를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보험계약대출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의 사정변경으로 보험료의 납입이 곤란하게 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 해약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일정 범위내에서 계약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고, 대출금과 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⑤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 1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 (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 3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해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 (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이라 합니다) 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은 제 5 조 (보험금 등의 청구) 에 정한 구비서류 및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약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제 1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제 2 항에서 정한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가능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 지정)을 기명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하, “기명 지정대리청구인” 이라 합니다)
2. 제 1 호에도 불구하고, 무기명으로 제 4 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제 1 항 제 2 호의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하,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 이라 합니다) 단, 지정된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예시

- 기명 지정대리청구인
 - 계약자가 기명하여 지정 : (예시) “김OO”
-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
 - 계약자가 특정인을 기명하지 않고 지정 : (예시)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 판단 예시

- 보험 가입 당시 무기명 지정대리청구인을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 (당시 해당 서류상 배우자 A)로 지정한 후에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어 대리청구하는 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가 B인 경우
 - 해당 시점 지정대리청구인은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로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 B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가능한 대리청구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 4 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단,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무기명 지정 대리청구인 지정은 피보험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③ 제 1 항에 따라 회사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금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⑤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비혼·독신인 경우 지정대리청구인의 신뢰 가능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 제 1 항에서 정한 지정대리청구인 자격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개별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⑥ 제 1 항에 따라 지정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지정 신청서(회사양식)
2. 계약자의 신분증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계약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⑦ 제 6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계약자가 지정대리청구인을 무기명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 6 항 제 3 호 내지 제 4 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 4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①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해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 (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3. 계약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3 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계약자가 대리청구인을 무기명으로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 1 항 제 2 호 및 제 4 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제 5 조 보험금 등의 청구

①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은 제 12 조 (특약의 보험기간)에서 정한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 (회사양식)
2.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3. 신분증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본 (지정대리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5. 기타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6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 5 조 (보험금 등의 청구) 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 1 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와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 1 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 이내를 지급) 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5 조 (보험금 등의 청구) 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 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 5 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 2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6 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 3 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 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를 한도로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분쟁조정신청

분쟁조정신청 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합니다.

④ 제 3 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 1 항 및 제 3 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 5 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 7 조 주계약에 사망보장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의 특칙

① 제 1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 (이하 “사망보장특약” 이라 합니다) 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 1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정한 보험금액은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액과 사망보장특약의 사망보험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금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제 1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 14 조 (다른 특약의 취급) 에 관계없이 청구일 현재 주계약 및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에 대한 이 특약의 보험금은 사망보장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 개월 이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제 3 항에 정한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을 자동갱신기간이 끝나는 날로 대체합니다.

⑤ 주계약에 부가되어 있는 사망보장특약의 경우에도 제 2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1 항 내지 제 6 항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제 2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8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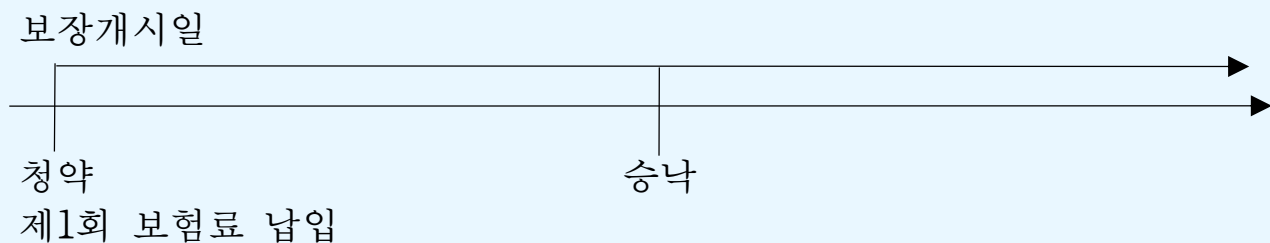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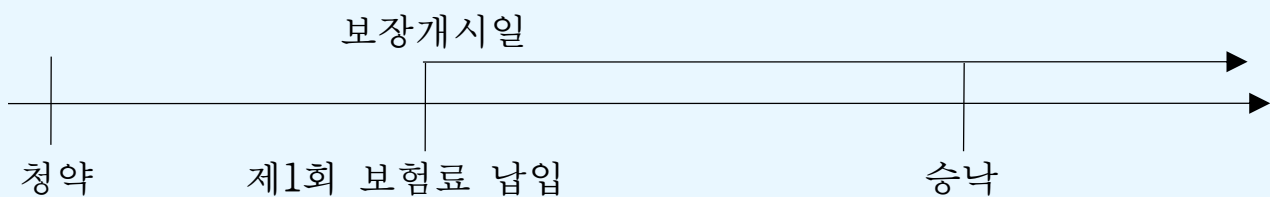
- 청약한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우



③ 이 특약을 부가하는 주계약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④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거나,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되거나 또는 제 1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

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

당사자가 행한 의사표시가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 9 조 특약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제 8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 2 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회사가 승낙한 때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 10 조 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11 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12 조 특약의 보험기간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특약을 부가한 날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 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을 자동갱신기간이 끝나는 날로 대체합니다.

제 13 조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2 명 이상인 경우의 특칙

①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2 명 이상인 경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 (주된 피보험자) 로 합니다.

②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2 명 이상인 경우 제 1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전부로 대체합니다.

③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2 명 이상인 경우 제 14 조 (다른 특약의 취급)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전부를 이 특약의 보험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주계약의 효력은 계속됩니다.

제 14 조 다른 특약의 취급

①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전부가 지급된 경우 주계약은 소멸되는 것으로 하며 주계약에 다른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② 주계약 사망보험금액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는 각 특약의 효력은 계속됩니다.

제 3 관 보험료의 납입

제 15 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제 16 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 (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 (효력회복) 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 (효력회복) 을 취급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 (효력회복) 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 (효력회복) 하는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제 9 조 (특약의 보장개시) 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 4 관 계약의 해지

제 17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 ② 제 1 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드립니다.

제 17 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범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 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 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 19조 제1항·제3항, 제20조 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

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③ 금융소비자는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④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 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지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④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기타사항 등

제 18 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 6 조 제 2 항 관련)

구분	적립기간	지급이자
선지급 사망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 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 일 이후부터 60 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
	지급기일의 61 일 이후부터 90 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
	지급기일의 91 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 6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

이자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나뉩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복리는(원금 + 이자)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연단위 복리는 복리를 연단위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 시 2년 후 원리금
연단위 복리 계산법 : $100\text{원(원금)} + 100\text{원} \times 10\%(1\text{년차 이자}) + [100\text{원} + 100\text{원} \times 10\%] \times 10\%(2\text{년차 이자}) = \text{총 } 121\text{원}$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